

제 안 설 명

-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1. 경 과

- 가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- 나. 제안일자 : 2007년 11월 3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정례회
 - 2007년 11월 30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강태원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
-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 기준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를 제33조로,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변경 함(안 제1조)
- 월정수당 조정
 - 월 1,830,000원에서 월 2,360,000원으로 조정함(안 제3조)

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운영전문위원 윤기관)

-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며
-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 가결”

7. 기 타 의 견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제안설명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2조”를 “제33조”로, “제15조”를 “제33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,830,000원”을 “2,36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개정규정에 위한 월정수당은 2008년 1 월분부터 지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<u>제32조</u> 및 동법 시행령 <u>제15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 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<u>제33조</u>.....<u>제33조</u>..... </p>
<p>제3조(월정수당)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<u>1,830,000원</u>으로 한다. 단,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3조(월정수당) ①..... <u>2,360,000원</u>..... 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33조 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保全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 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 3. 월정수당 :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,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
- ②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사는 행복한 도민



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



수신자 수신자참조
(경유)

제목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통보

- ‘07. 9. 19(수)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(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)<구별 제15조의2>에 의거 구성된 「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」에서는 ’07. 10. 31(수)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,
- 『2008년도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』을 결정하여 동법 제34조 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,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정비 : 연 4,632만원(월 386만원)

(1) 의정활동비 : 연 1,800만원(월 150만원)

(2) 월정수당 : 연 2,832만원(월 236만원)

(3) 여비 :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범위

나. 인상금액 : 연 636만원(현의정비 3,996만원 대비 15.92% 인상). 끝.

선결	의장	<i>김재현</i>	사무처장	<i>김재현</i>
접수일자	2007.10.31.	번호 043-0047- 002302	(공람)	담당관 <i>김재현</i>
처리과		담당 계장		

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

수신자 충청북도지사, 충청북도의회의장

★지방행정서기 방해진

지방행정사무관 *이승환* 위원장

협조자

시행 의정비심의위원회-7 (2007.10.31) 접수 ()

우 360-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(문화동) <http://www.cb21.net>전화 043) 220-2133 / 전송 043) 220-2119 / *haejinb@cb21.net* / 공개